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가단50021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 피고와 C(D.생) 사이에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을 6,108,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10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1689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2023.

12. 12. 기준 13,616,509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1.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산 동래구의 압류등기(채권액 140,000원)가 2022. 12. 1., 부산 금정구의 압류등기(채권액 970,000원)가 2023. 3. 13. 각 말소되었다.

라. C은 2021.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의 공시지가는 7,21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은평구청, 동래구청, 금정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1/10 지분이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6,108,000원(= 부동산 가액 7,218,000원 - 압류 채권액 140,000원 및 9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원물반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원고의 가액배상청구에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 등에 기초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인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점(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별지